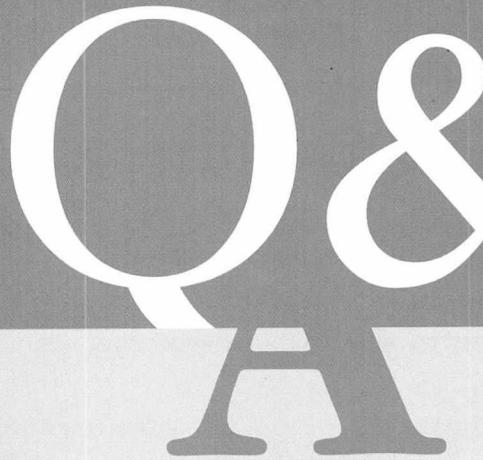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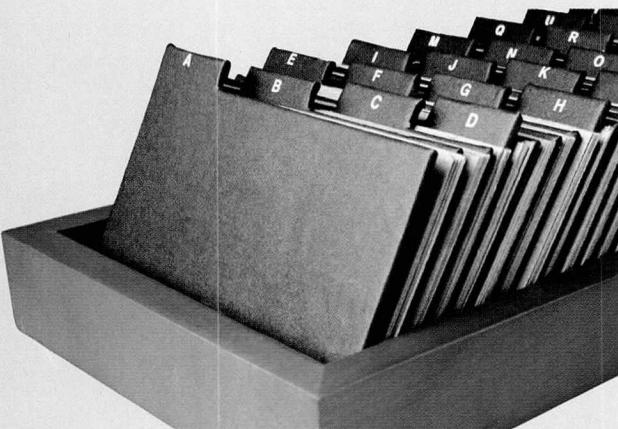


## Q & A

궁 · 금 · 합 · 니 · 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과 관련하여 A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하고 B특수건물로 연소 확대되어 B특수건물의 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와,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화보법 제4조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을 제외한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특수건물과 B특수건물의 사망 또는 부상한 직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하며, 방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범위는 같습니다. 다만, 방화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화재원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특수건물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종합보험 가입시 특약사항 중 '80% co-insurance clause-applicable for building only 80%' : 공동보험 조항 건물에 한하여 적용'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80% co-ins.(80% 공동보험 조항)'이라는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즉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상일 경우 일부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100%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요율 구독시 유리하게 적용되는 만큼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Q 건축허가 당시와 달리 공사진행 중 몇몇 실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에 따른 허가기준 소 방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아파트의 경우 피난을 위해 세대마다 피난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칸막이의 재질, 두께 등이 궁금하며 석고보드를 경량칸막이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의 발코니에 피난을 위해 설치하는 피난용 칸막이벽의 구조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건축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 중에 '(2) 피난계획 ○ 단위 세대간 발코니 부분에 상호 피난가능한 경량칸막이로 미감 필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량칸막이의 범위는 세대간의 연소 확대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내화구조)보다는 완화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방화구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3호에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제7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용도변경 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용도변경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전제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 특수건물의 소화설비할인규정에서 옥내소화전 설비 중 갑, 을, 병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옥내소화전의 경우 갑은 10%, 을은 8%, 병은 5%의 화재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옥 내 소 화 전		
		갑	을	병
방 수 압		2.5kg/cm <sup>2</sup>	2.0kg/cm <sup>2</sup>	1.7kg/cm <sup>2</sup>
방 수 량		250 l /min	150 l /min	130 l /min
급수원	1차	40분간을 계속 방출할 수 있는 양으로서 동일층에 설치된 소화전 2개까지는 20m <sup>3</sup> 이상, 소화전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30 m <sup>3</sup> 이상	40분간을 계속 방출할 수 있는 양으로서 동일층에 설치된 소화전 2개까지는 12m <sup>3</sup> 이상, 소화전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18 m <sup>3</sup> 이상	20분간을 계속 방출할 수 있는 양으로서 2개 이하 6m <sup>3</sup> 이상, 3개 9m <sup>3</sup> 이상, 4개 12 m <sup>3</sup> 이상, 5개 15m <sup>3</sup> 이상
	2차	(1) 2차 수원으로 고가탱크 또는 압력탱크를 설치하고 소화전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1차 급수원의 수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2) 고위저수탱크(고가탱크 등 포함)를 급수원으로 하는 자연낙차압력방식으로서 급수원의 유효수량이 1차 급수원에서 정한 수량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2차 급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